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와 사회상*

임상혁**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사실관계와 소송의 결말
- III. 분쟁의 원인
- IV. 노비의 신분에 관한 법제
- V. 효적과 암록 관행
- VI. 법제와 사회상 : 투탁, 암록
- VII. 맺으며

[국문요약]

김성일이 나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내린 판결문 가운데 하나인 1586년의 이지도·다물사리 소송 사례는 16세기의 노비법제와 그 시행실태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노비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이 양인임을 내세우고 그 상대방은 자신의 노비라고 주장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상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피고가 스스로를 양인이 아닌 노비라고 주장하는 기이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조선의 노비법제가 빚어내는 하나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조선의 법제에서 부모의 한 사람이 천인이면 자손을 그 쪽을 따라 노비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 모두가 노비일 경우에는 어머니쪽의 주인의 자식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천인에는 크게 사노비가 공노비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더욱 편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이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B00298)

2006년 7월 1일(토) 한국법사학회 제77회 정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를 일부 보완한 것임.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도는 다물사리가 자기 집안의 노비인 윤필과 혼인한 양인이고, 따라서 그 소생인 인이와 인이의 자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다물사리는 성균관에 소속된 공노비라고 맞서는 것이다.

양 당사자가 서로 변론하면 다투는 가운데, 노비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하고, 투탁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노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인을 자신의 호적에 몰래 노비로 올리거나(暗錄), 투탁을 조장하는 관행도 드러난다. 이처럼 이지도·다물사리 소송의 판결문은 당시의 법제 운용, 사회상을 실감나게 보여 준다.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판결문을 정서하여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어] 노비소송, 이지도, 다물사리, 김성일, 암록, 투탁, 판결문, 결송입안

I. 들어가며

근래에 들어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그 발굴 작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결과 드물고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조선전기의 결송입안도 그 수가 늘어나서, 현재는 10건 정도가 원본으로¹⁾ 존재한다.²⁾ 이 가운데는 연대가 떨어져 나간 문서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김성일(金誠一)이 나주목사로 재직하면서³⁾ 내린 판결들로 밝혀진 것들도 있다.⁴⁾ 이러한 발굴 속도에 비해 오히려 그 연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는 데에는 자료 접근의 어려움, 인식의 부족 따위가 작용하는 듯하다.

판결문은 법률문서로서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갈등과 사회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매우 가치 있는 사료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고문서집성』 시리즈의 제6권에 ‘입안 15’로 실려 있는 판

1) 이른바 ‘安家奴案’(1586년 사건)은 轉寫된 형태로 『大東稗林』에 전해지므로 [『稗林』(탐구당, 1969), 156~181면], 원본이 아니다. 하지만 원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목록은 이수진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아카넷, 2004), 324면 참조.

3) 1583(선조16)년 8월에서 1586(선조18)년 12월까지 재직하였다.

4) 모두 다섯 건이며, 그 규명 과정은 임상혁, 『朝鮮前期의 民事訴訟과 訴訟理論의 展開』(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2~15면; 임상혁,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 - 允元·林慶秀 소송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21집(한국고문서학회, 2002.12), 80~81면 참조.

결문 사례⁵⁾(이하 ‘이지도 · 다물사리 소송’이라 부름)도 또한 위에서 말한 김성일의 판결문들 가운데 하나로서 조선의 노비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이 글에서 진행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조선전기의 민사소송[詞訟]은 노비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조선의 노비는 매매, 상속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완벽한 재산상의 행위 능력과 소송능력을 갖는 인격적 측면을 모두 갖는 특징 때문에, 노비에 관한 소송 또한 이러한 양면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노비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⁶⁾에서는 전답(田畓)에 대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재산권 분쟁의 양상을 띠게 된다. 하지만 사노비(私奴婢)가 자신이 양인임을 호소하는 경우[訴良], 또는 양인에 대하여 자신의 노비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분 문제와 재산권의 문제가 맞물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비소송에서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이 양인임을 내세우고 그 상대방은 자신의 노비라고 주장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586년 이지도(李止道)⁷⁾와 다물사리(多勿沙里)의 소송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곧, 원고⁸⁾인 이지도는 오히려 다물사리가 양인이라 주장하고

5) 『古文書集成』 제6권[義城金氏川上各派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23~29면.(정서본으로 는 142~150면).

6) 노비에 대한 권리가 과연 소유권인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납공노비(納貢奴婢)의 경우 그에 대한 권리가 노리는 것은 그 인신(人身)보다는 그가 바치는 신공(身貢)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노비의 역에 대한 권리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는 소송의 형태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송에서처럼 소유권의 다툼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소유권이라 하였다.

7) 정서본에서 李止道와 李熙道가 등장한다. 원문을 확인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같은 글자를 ‘止’와 ‘熙’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李止道’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등장하기 때문에 李止道로 통일한다.

8) 소를 제기한 이는 이유겸의 아내 서씨이고 아들인 이지도를 그녀를 代訟하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원고는 서씨이고 이지도는 소송대리인이라 할 것이다. 다투고 있는 것도 다물사리의 딸인 인이(仁伊)의 신분이다. 하지만 문서에서 소송을 수행한 이지도를 원고라 하고 있어 현행 제도와는 다르다. 문서상 나타나는 당시의 기준에 따라 여기서도 이지도를 원고로 한다. 하지만 이지도는 서씨의 상속인이 될 것이고 다물사리는 인이의 어머니 인 만큼 소송의 결과가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관계여서 당사자와 다름없는 지경이다.

피고인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임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조선의 노비법제가 빚어내는 하나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II. 사실관계와 소송의 결말

판결문에 나타난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아래처럼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날짜/관계인		내용
?	?	문서 결락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움(다물사리가 잡혀와 소송하기에 이르는 정황이라 짐작됨).
1586. 3. 13	이지도 다물사리	시송다짐
		이지도는 이유결(李惟謙)의 아내 서(徐)씨의 대자(代子) ¹⁰⁾ 로 소송함
	이지도 (원고)	구술변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 집안의 노 윤필은 이순의 딸인 양녀 다물사리와 결혼하여 딸 인이를 낳았고, 인이는 구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 2. 이들은 즉 수공(收貢) 또는 양역(仰役)되었는데, 1584년부터 이를 거부하였다. 3. 구지는 장모인 다물사리를 꼬드겨 그녀로 하여금 영암군 성균관비인 길덕의 소생이라고 신청하게 하였다. 4. 각각의 호적을 상고하면 드러날 것이다.
	다물사리 (피고)	구술변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버지 종산은 자기가 어렸을 때 죽어 이름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 길덕은 다섯 살 때 죽었으며, 13세 때 나주의 윤필과 결혼하여 인이를 낳았고, 인이는 영암군의 구지와 결혼하였다. 2. 1584년에 영암군의 성균관비라 하여 천안(賤案)에 올라 그 때부터 신공을 바쳤다. 3. 죽은 윤필의 상전인 이유결의 집안에서 인이의 자손이 많은 것을 노려 자신을 양녀로 호적에 올렸다.
1586. 3. 14	나주판	호적조사
		임오년(壬午 1522) · 정유년(丁酉 1537) · 경자년(庚子 1540) 호적
1586. 3. 15	다물사리 (피고)	구술변론
		호적을 살펴 시행해 달라.

9) 이러한 사례가 드물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투탁이 심했던 조선 후기에는 스스로가 노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판결문으로 남아 있는 사례로서는 이것이 유일하다.
 10) 이 판결문에서는 아들로서 소송대리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586. 3. 20	조송진 (증인)	증언
		다물사리가 양인인지 여부는 모른다고 증언.
1586. 3. 22.	영암겸임 장진현감	철정
		소지와 의송에 따라 구지를 잡아 보내 소송하도록 하려 했으나 구지가 도주하여 잡아 보내지 못하고, 갑신년(1584) 수공안(收貢案)에 관련 이름이 없지만 상고하기 위해 보냄
	영암겸임 장진현감	철정
		이지도의 의송에 천안(賤案)으로 다물사리를 상고하라는 관(關)이 있어 정안흘림(正案流音)을 살폈으나 상고할 수 없어 이를 보냄
1586. 4. 2	다물사리	구술변론
		갑오년과 계미년의 천안에 길덕의 이름이 나오며, 자신은 관비임이 맞다.
1586. 4. 3	이지도	추정소지 제출
		다물사리의 말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나이, 연도 따위가 자주 바뀌고 있어 믿을만하지 못하다.
1586. 4. 17	다물사리	구술변론
		어려서 부모가 죽어 친척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
1586. 4. 19	다물사리	구술변론
		이유겸의 아내 서씨와 이지도가 간계를 부리니 통분하다.
1586. 4.	처음 송관 (始訟官)	입지(立旨)
		이유겸의 아내 서씨의 소지, 다물사리의 진술(1584년 7월 25일)
1586. 4.	나주관	판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적에 다물사리가 양녀로 되어 있다. 2. 영암군 천안에 어머니라 하는 길덕은 실려 있지만, 다물사리는 보이지 않는다. 3. 영암군에서 보내온 자료에도 예서도 다물사리가 성균관비라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4. 공안(貢案)에 길덕의 자식들이 나오지 않는다. 5. 현재 82세인 다물사리가 다섯 살 때 어머니가 죽었다 하였는데, 길덕은 1536년에 죽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6. 인이와 그 소생을 이유겸의 아내 서씨에게 결급한다. 7. 주인을 배반한 죄에 대해서는 나이 70이 넘었기 때문에 형을 가하지 않는다.

문서의 앞부분이 심하게 떨어져 나가 있어 잘 파악되진 않으나 뒷부분과 맞추어 보면, 2년 전인 1584년 7월 무렵에 이유겸(李惟謙)의 아내인 서(徐)씨가 영암군(靈巖郡)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송되어 온 사건으로 보인다. 피고가 영암군의 노비빃리(奴婢色吏)¹¹⁾와 통모하여 벌인 사건이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어, 영암군에서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송은

이유겸(李惟謙)의 아내인 서(徐)씨가 관찰사에게 신청하여 그 처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경우 ‘의송(議送)’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고을 수령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항소하는 것이 의송이라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선 전기의 판결문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찰사가 내린 처분 자체가 의송으로 표현되며,¹²⁾ 관찰사에게 제출하는 문서도 대개 소지라 하고 있다.¹³⁾

이유겸은 일찍 죽었다고 하며, 멀리 떨어진 나주에서 소송하게 되었기에 아들인 이지도가 어머니 서씨를 대송(代訟)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지도의 주장은, 다물사리가 이순(李順)의 자식으로 양인으로서 자기 집안의 노비 윤필(允必)과 혼인하여 딸 인이(仁伊)를 낳았으며, 그녀는 영암군의 사노(寺奴)¹⁴⁾인 구지(仇之)에게 시집갔고, 구지가 다물사리를 꺾어 영암군의 노비빃리와 짜서 영암군인(靈巖郡案)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물사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어 누구인지 모르며, 어머니는 성균관비(成均館婢) 길덕(吉德)으로 천적(賤籍)에 올라 있다고 맞섰다.

판결은 인이의 소생들을 서씨에게 결급해 주고, 이 사실을 성균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영암군 천안에 길덕만 올라 있고, 무인년(戊寅年) 공안(貢案)에의 길덕의 자식은 전혀 없다. ② 현재 82세인 다물사리가 다섯 살 때 어머니가 죽었다 하였는데, 길덕은 1536년¹⁵⁾에 죽었으니 말이 맞지 않는다. ③ 윤필과 이순의 호적으로 볼 때 다물사리가 양인임이 분명하다. 다물사리의 처벌도 논의되었는데, 그녀가 주인을 배반하고 다른 이에게 투탁(投託)한 죄가 분명하지만, 나이가 이미 70을 넘겼기 때문에 체형(體

11) ‘色吏’는 빃리, 색리로 읽히며,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하급 아전을 말한다. ‘빃아치’라고도 했던 모양인데, 더 오래된 용어일 것이다. 따라서 노비빃리는 노비의 관리를 담당하는 아전을 가리킨다.

12) 임상혁, 『조선전기의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52~53면. 이를 깊이 다룬 것으로는 김경숙, 『16세기 請願書의 처리절차와 議送의 의미』, 『고문서연구』 제24집(한국고문서학회, 2004. 8) 참조.

13) 16세기인데도 이것이 의송이라 표현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예를 들면, 민속박물관 고문서 1556년 故 忠義衛 金漢祐 妻 李氏 소지.

14) 절에 소속된 노비.

15) 다물사리의 나이 32세 때에 해당한다.

刑)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Ⅲ. 분쟁의 원인

이지도의 주장하는 사실 관계는 이렇다. 아버지 이유겸(李惟謙)의 노비인 주산(主山)의 아들이 윤필(允必)인데, 그는 나주에 사는 이순(李順)의 딸인 다물사리와 결혼하여 인이를 낳았다. 인이는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사위 노비인 구지(仇之)와 결혼하여 봉화(奉化), 봉세(奉世), 인화(仁化), 봉선(奉先), 봉익(奉益), 봉이(奉伊)를 낳아 기르면서, 신공(身貢)을 바치기도 하고, 양역(仰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갑신년(1584년)부터 이를 거부하여 노복을 시켜 잡아오려 하자 구지가 작대기로 때면서 내쫓아 버렸다. 더욱이 그는 장모인 다물사리를 꼬드기고 영암군의 노비빃리와 짜서, 그녀를 죽은 성균관비(成均館婢) 길덕(吉德)의 소생으로 자수[自現]하도록 한 뒤, 영암군의 장부에 등록시켰다. 이처럼 본주를 배반하도록 하여 불법적으로 관비로 삼는 것은 큰 죄이며, 통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애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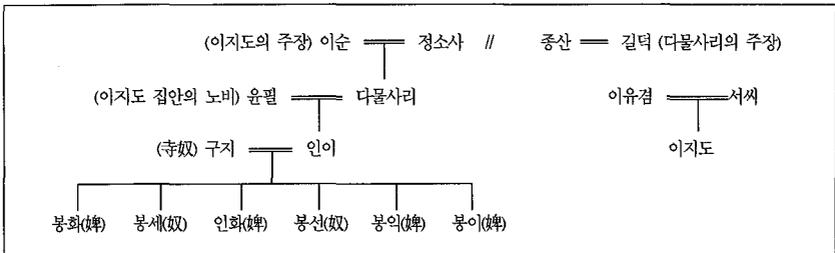
이와 다른 사실을 다물사리는 주장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 종산(從山)이 죽어 이름도 몰랐다. 어미는 성균관비인 길덕인데, 피고가 다섯 살 때 죽어서 그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열세 살 때 나주에 사는 윤필과 결혼하였고, 그가 죽은 연도와 날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렵게 살다가 영암군에 사는 사위 구지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갑신년에 영암군에서 저를 성균관비라 하여 군의 장부에 편성하고 봉선, 봉익, 봉화, 봉세, 인화, 봉이의 신공을 받아갔다. 다시 말해 알고 보니 자신이 관비(官婢)였다는 주장이다.¹⁷⁾

이지도 · 다물사리 소송을 촉발시킨 인물은 구지(仇之)라는 사노(寺奴)이다. 그는 부유한 인물이라 하는데, 이유겸(李惟謙 이지도의 아버지)의 아내 서(徐)

16) 뒤의 [붙임] 정서본 25~56행.

17) [붙임] 56~76행.

씨의 소지를 보면 한 차례 재산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내인 인이(仁伊)는 이유겸 집안의 노비인 윤필(允必)과 다물사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리하여 뒤에서 보겠지만 인이의 신분은 노비이고, 그 자손도 또한 노비이다. 호적의 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에 터잡아 도식으로 가계를 그리자면 아래와 같다. 다물사리의 부모가 누군지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것이 이 소송의 핵심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이다. 뒤에서 보겠지만, 다물사리가 양인이라도 그 남편인 윤필이 노비이므로 그 자손은 노비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자손들의 소유권은 이지도의 집안이 갖게 된다. 하지만 다물사리가 노비일 경우 인이는 누구의 노비가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당시의 제도는 어머니쪽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다물사리가 노비가 아니라고 이지도가 주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물사리로서는 자신이 공노비라 주장하여 자식들로 하여금 구속이 덜한 공노비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신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로 지목한 이에 대하여 노비임을 주장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지도·다물사리 소송에서는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양인이라 주장하고, 피고 자신은 노비임을 고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재미있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천인이면 자식이 모두 천인이 되도록 하면서[一賤則賤], 그 자식의 소유권은 어머니 쪽의 소유자가 차지하도록 하는 당

시의 노비 법제 때문이다.

IV. 노비의 신분에 관한 법제

조선의 노비의 신분¹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야이다. 신분의 세습에 관해서는 종모법(從母法), 종부법(從父法) 등의 논의가 있어왔다.¹⁹⁾ 여기에는 용어 사용의 문제도 한몫을 하는 듯하다. 아버지의 어느 한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관되지는 않는 데다,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쪽을 따른다는 것이 노비의 신분인지, 그 소유권인지, 그 역(役)인지를 정확히 가려져야 할 경우가 많고, 조선 전기에서 종부(從父)라 일컬어지는 것들은 일종의 예외와 같은 것으로 보는 쪽이 알맞다.

조선의 법제는 양인과 천인이 서로 통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엄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였다. 양천간의 혼인으로 나온 자손을 노비가 되도록 한 것도 그에 대한 규제일 수 있다. 하지만 양천간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천인을 첩으로 두는 예는 무수히 많았다. 이른바 천첩자녀는 또한 노비로서 아버지의 다른 자손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곧, 배다른 자기 형제들에게 부려질 수 있다는 존재였다. 세대가 지나면 잘 사환하라는 명종(明宗) 때의 수교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²⁰⁾

18) 신분은 당시의 법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조선의 신분제도에 관하여 법제를 중심으로 규범적 분석을 한 것으로는 조우영, 「《경국대전》의 신분제도」(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 관련하여서는 96~105면 참조.

19) 이에 관해서는 이성무, 「조선초기 노비의 종모법과 종부법」, 『역사학보』 제115집(역사학회, 1987); 이홍두, 「조선전기 노비종부법과 천인의 신분상승」, 『실학사상연구』 제12집(무악실학회, 1999) 참조.

20) 『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서울대학교奎章閣, 1997. 영인), 59~60면.

갑인년(1554년) 3월 27일 승전(承傳)

골육상잔(骨肉相殘)은 사환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전에 실려 있지 않거늘, 습속에 전해져 법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재판할 때마다 속공(屬公)시키니 매우 부당하다. 노비와 주인의 사이는 매우 엄격한데도, 형제와 4촌을 부리는 것이 참으로 인륜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미 천적(賤籍)에 있더라도 형제와 4촌이어서 사환되지 못하고 얼마 뒤 면천한다. 하지만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명률》에는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없다. 다만 《경제육전》(속집)에 “할아버지의 비첩(婢妾) 소생은 본래 동기이니 노비의 예로써 일 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를 볼 때 형제와 4촌은 부리지 못하더라도 5, 6촌이 되면 친속이 점점 멀어져 사환하여도 안될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근래에 관리들은 골육상잔이라는 헛말에 넘어가 매번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한다. 이는 한편으로 남의 노비를 뺏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천인을 양인으로 만드는 것이니, 모두 옳지 않다. 방역노비(放役奴婢)의 예에 따라 5, 6촌부터는 일을 시켜도 부당하지 않다. 골육상잔은 본래 법전에 없다는 취지를 서울과 지방에 잘 알려, 이제부터는 영원히 금지하도록 한다. 다만 이미 속공한 것은 다시 심리하지 말아서 시끄러운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형조에 전교(傳敎)한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천첩자녀도 자신의 피가 흐르는 자식임에 틀림없는데, 그를 비롯한 그의 자손들이 노비가 되어 다른 자식들에게 부러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일 수 없다. 그리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의 비첩(婢妾) 소생들을 양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선 종친과 같이 존귀한 혈통은 아무리 친한 피와 섞여도 그 자손이 천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노비를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다.²¹⁾ 다음으로 2품 이상의 고관인 경우에 그의 천첩은 자신의 여종을 대신 장예원에 신고 시키고서 노비를 면할 수 있다.²²⁾ 그의 자손들은 양인이 된다.

21) 종친으로서 시마복 이상이거나 외성(外姓)으로 소공인 이상인 (임금의) 친족인 경우 그 천첩 자녀는 양인이 된다.[宗親總麻以上; 外姓小功以上親, 賤妾子女並從良.](『經國大典』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서울대학교奎章閣, 1997. 영인) <형전> 賤妻妾子女條, 500면)

일반 관원들에 대하여는 《경국대전》에 “대소 관료[大小員人]로서 공·사노비를 아내나 첩을 삼은 이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장예원에 신청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등록한 뒤, 병조에 이첩하여 보충대에 배속시킨다. 16세가 되도록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내고 3년이 지나도록 입안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 보충대에 배속된 뒤 役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하여 다시 천인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²²⁾는 규정이 있어,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하여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때 관료 외에 일반 양인의 자손에게도 적용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기도 하였다.²⁴⁾

이상의 경우 말고는 아버지쪽을 따라 신분이 양인이 되는 경우가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인인 경우에는 어머니 신분의 덕택으로 속량되지 못한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종모(從母)라는 것은 부모가 모두 노비일 때 자식이 어느 쪽을 좇게 되는지 하는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조선 후기에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바뀐 제도와는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물사리의 경우 그의 신분이 주장대로 관비라면 자손들은 공노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양인이라면 딸 인이는 사노비인 아버지의 상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22) 2품 이상인 경우, 자녀가 있는 공·사천첩은 자기의 여종을 장예원에 신고시켜 몸값을 치름으로써 양인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二品以上, 有子女公·私賤妾, 許以自己婢, 告掌隸院, 贖身.](『경국대전』, <형전> 賤妻妾子女條, 500면)

23) 大小員人, [割註 생략] 娶公·私婢, 爲妻妾者之子女, 其父告掌隸院, 覈實錄案, [割註 생략] 移文兵曹, 屬補充隊. 年十六不告者, 告狀後過三年不立案者, 付案後不立役者, 許人陳告選賤.(『경국대전』, <형전> 賤妻妾子女條, 500면)

24) ‘大小員人’의 다음에 ‘及良人’을 첩부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국대전》 반포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고, 편찬과정에서 실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다가 지금 남아있는 형태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시행 6년만인 1491년(성종 22년) 다시 ‘及良人’을 끼워 넣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 때 성종은 영돈녕 이상의 대신과 육조, 한성부의 고위 관료, 삼사의 관원들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고, 대부분 신료들의 견해와 달리 소수 관원의 주장을 따라 그 글귀의 삽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집요한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에 바로 폐지하였다. 이러한 식의 논의 끝에 결국 1543년에 나온 《대전후속록》에는 ‘及良人’이 들어가지게 되었다.

V. 호적과 암록 관행

이 사건은 대개의 사건들처럼 법 적용의 문제보다는 사실관계의 확인만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곧, 다물사리의 신분이라는 사실만 확정되면 모든 것은 그에 따라 풀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호적이다. 호적은 신분질서 유지, 군정 및 수취 대상자의 확보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되므로,²⁵⁾ 국가는 정기적으로 호구를 조사하고 정확한 호적 작성을 위해 애쓴다. 그 결과 호적을 통해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호적 자체가 신분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이 소송에서도 호적이 중요하게 참조된다. 그렇다고 해서 호적의 내용만으로 확정지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추정력이 인정되는 모습은 살필 수 있다.²⁶⁾ 곧, 호적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가 그 증명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장적의 내용대로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호적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한 다물사리는 결국 패소한다. 조사대상인 호적은 임오장(壬午帳 1522년), 정유장(丁酉帳 1537년), 경자장(庚子帳 1540)이었다.²⁷⁾ 임오년 호적에는 다음과 같이 실렸다.

호(戶) 이순(李順) : …[문서결락]… 나이 61 임오년생 본관 진주, 아버지는 달오미(達五未), 할아버지는 석기(石只) 증조부는 성(成), 어머니는 분금(分今), 외할아버지는 진귀생(陳貴生)

아내 정조이(鄭召史) : 나이 42 정축년생, 본관 나주, 아버지는 호장(戶長)인 정량(鄭良), 할아버지는 호장인 사종(士從), 증조부는 강이(江伊), 어머니는 나조이(羅召史), 외할아버지는 이삼중(李三中)

25) 이종일, 「朝鮮前期의 戶口·家族 財産相續制 研究」, 『국사관논총』(국사편찬위원회, 1990), 2면.

26) 판결과 호적의 추정력에 관해서는 임상혁, 「1583년의 한 訴良爲賤」, 113~114면 참조

27) [붙임] 77~89행.

장녀 다물사리 : 나이 10 정묘생

경자장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호 사노(私奴) 윤필 : 나이 44 정사년생, 아버지는 사노 주산(主山), 어머니는 양녀 보배(寶背)

아내 양녀 이조이(李召史) : 나이 34 정묘년생, 아버지는 학생 순(順), 어머니는 종대(從代), 외할아버지는 이삼중(李三中)

정유장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호 사노(私奴) 윤필 : 나이 41 정사년생

아내 양녀 이조이(李召史) : 나이 3 정묘년생, 아버지는 학생 이순, 어머니는 종대

경자년과 정유년의 호적에 윤필의 아내로 되어 있는 이조이²⁸⁾는 임오장과 대조해 보면 이순의 딸인 다물사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날인 3월 15일에 송관은 다물사리를 불러 호적 조사의 내용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다물사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호적 기재 사실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일은 그것만으로 확정짓지 않고 증인 신문을 하였다. 닷새 후인 3월 20일 송정(訟庭)에 불러 나온 사람은 나주 남화리에 사는 유생(儒生)인 조송진(曹崇陳)으로 77세의 노인이었다. 다물사리가 양인으로 윤필과 혼인하여 살면서 그의 자손들이 이유겸의 집에서 양역한다고 듣긴 했는데, 다물사리와는 서로 본 적이 없어서 투탁했다는 사정을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²⁹⁾ 3월 22일에는 영암 겸

28) ‘召史’(소사)는 이두식 표기인데, 결혼한 여성에게 붙이는 이름으로서 ‘조사’, ‘조이’라고 읽는다. 대개 양인인 서민들의 여성에게 흔히 붙여졌다. 후대에 가서는 한자음대로 ‘소사’라고도 많이 부르게 되었다.

29) [붙임] 100~121행.

임 강진(康津)현감³⁰⁾으로부터 첩정(牒呈)³¹⁾이 왔는데, 수공안이나 천안에 다물사리는 물론 길덕은 자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결국 다물사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는 없는 셈이고, 다물사리는 패소하였다.

다물사리는 이지도의 집안이 인이와 그 자손들을 차지할 생각으로 호적에 자신을 양인이라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²⁾ 김성일이 판결한 또다른 사건인 1583년 윤원(允元)과 임경수(林慶秀) 사이의 소송에서도 호적을 이용한 노비 획득 방법 곧, ‘암록’(暗錄)이 등장한다.³³⁾ 암록은 세조 때 전가사변에 처하는 중한 범죄로 논해지고,³⁴⁾ 『수교집록』도 실리게 된다.³⁵⁾ 하지만 이들 법조는 타인의 노비나 양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³⁶⁾ 다물사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지도 집안은 그 노비의 아내의 신분을 양인이라 표기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조문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노비를 자신의 노비로 획득하게 되므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된다. 호적을 이용한 노비 쟁탈의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호적과 관련한 노비 쟁송의 한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30) 그 즈음 영암군수 원량(元亮)은 2월에 옮겨갔고, 새 군수 조경록(趙景祿)이 부임한 것은 4월 이라, 3월에는 공석인 상태였다(『영암읍지』를 통한 파악). 그리하여 이웃 강진현감이 겸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31) 첩정이란 낮은 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을 말한다. 반대로 상급관청이 동급이나 하급의 관청에 보내는 문서는 관(關)이라고 한다.

32) [붙임] 68~75행.

33) 『古文書集成』 제6권, 입안 제13, 11~14면(정서본으로는 127~132면).

34) 세조 9(1363)년 1월 12일 호폐사목 제13조: 남의 노비나 양인을 암록하여 노비로 삼은 경우 장 100에 全家徙邊하도록 규정한다(『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영인] 제7권, 562b, c면.).

35) 『受教輯錄』, 戶典 戶籍條: 다른 이의 노비를 몰래 호적에 올린 것이 적발된 경우, 비리호송과 압량위친의 규정으로 처벌한다(暗錄他人奴婢現發者, 論以非理好訟·壓良爲賤之律)(『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 148면)

36) 압량위친의 한 양태로서 암록과 관련한 법제의 성립과 구체적인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상혁,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 115~118면을 참조.

VI. 법제와 사회상 : 투탁, 암록

이지도 · 다물사리 소송은 노비법제의 운영상황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다. 양천교혼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비 획득의 방법으로 자행되는 암록 관행의 존재는 호적의 기재 내용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된다. 3년 전의 윤원도, 이번의 다물사리도 암록을 주장하였다. 암록의 관행은 끊이질 않았는지 처벌 법규가 갈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그런 만큼 암록을 주장하며 신분의 질곡을 벗어나려는 시도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해주는 것이다.

원고는 일찍부터 다물사리의 배후 인물로 사위인 구지를 지목하였다. 그의 행패를 드는 이지도와 서씨의 소지를 보면, 본 소송에서와 같은 수법을 쓴 것이 이미 처음이 아니다.

대체로 구지는 광포한 사람으로 부유한 까닭에 관리와 짜고서 거리낌 없이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구지는 원래 충청도 옥천(沃川) 사는 사람의 종놈이었는데, 성균관에 투탁하여 본주를 배반하였으니 본래 버릇이 안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십셋 년 전에 어이없는 일로 화를 입어 돌아가셨는데, 저는 나이 어렸고, 어머니는 미약하였습니다. 구지는 이 기회를 틈타 주인의 배반하도록 하는 꾀를 내었으니 더욱 통분합니다. 다물사리가 관비라고 칭하지만 몇십 년 뒤에 나타나 자수하였으니 진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나주 태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영암군의 소생이라 말합니다. 이는 호적을 상고하여 윤필의 사조(四祖)와 이순의 사조(四祖)를 확인해 보면 드러날 것입니다.³⁷⁾

구지라는 인물의 등장 또한 흥미로운 사회상을 보여준다. 부를 축적한 노비인 구지는 자신도 성균관 투탁을 통해 관노(館奴)가 되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서 구지는 사노(寺奴)라고 일컬어지므로, 이 내용이 꼭 사실이리라는 보장은 없

37) [붙임] 41~56행. 같은 내용이 이지도의 어머니인 서씨의 소지([붙임] 255~270행)에도 나온다.

다. 하지만 경제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대기로 내치는 실력 행사를 보이기도 하면서, 신장된 힘으로써 주변의 처지를 변화시켜보려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시인하는 태도가 보이는 것은 틀림없다. 이지도와 같은 양반층은 이런 현상을 불손한 천민들의 신분질서 교란행위로 볼 밖에 없고, 따라서 구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현상이 조선후기에 노비법제가 변화하게 되는 한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여기서 사노비를 벗어나는 방법은 투탁(投托)이었다.³⁸⁾ 나주관의 첩정을 받은 영암군에서는 노비빃리인 서원(書員) 최만수(崔萬守)를 다그쳤고, 그는 다물사리가 관비로 투탁하였기에 서류가 없다고 말한 것도 다물사리가 패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물사리가 관비로 들어가는 것은 양인이 신분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투탁이다. 이러한 일은 여러 부담을 지기보다는 차라리 신분이 떨어지는 쪽이 좋다고 여기는 경우에 일어난다.

역을 지는 나이를 지난 과부 다물사리가 투탁하는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말할 것도 없이 딸과 손주들 때문이다. 곧, 사가(私家)에 매이게 된 그들로 하여금 사역(私役)을 피해 관가(官家)에 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전형적인 투탁과 다름없게 된다. 사천을 피해 공천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노비보다는 공노비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공노비라 하더라도 부담하는 역의 종류에 따라서는 부담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³⁹⁾ 그래도 전라도 영암에 있는 성균관비에게는 서울의 본주에 대한 개념이 그리 강하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그리하여 구지도 다물사리도 성균관비로 투탁하려 했을 것이다.

38) 이 시기의 투탁에 관한 연구로는 지승중, 『朝鮮前期의 投托과 壓良爲賤』, 『사회와역사』 제8권(한국사회사학회, 1987. 12)가 있다. 여기서는 종량(從良)이 어려웠던 만큼 고역을 피하려는 동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39) 위의 논문, 13~17면 참조.

VII. 맺으며

판결문의 분석은 법제도의 운영을 보다 생동감 있게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당시의 사회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이지도 · 다물사리 소송에서도 이른바 반주설계(叛主設計)와 압량위천(壓良爲賤)의 주장 대립이 실감나게 나타난다. 그 방법으로 양인을 자신의 호적에 몰래 노비로 올리거나(암탁), 투탁을 조장하는 관행도 살필 수 있게 한다. 또 그에 대응하여 노비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력을 이용하거나,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하고, 신분이 떨어지는 투탁하기도 하는 등의 사회상이 소송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스스로는 노비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를 양인이라 주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이지도 · 다물사리 소송의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노비제의 운영과 그 구체적인 실상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노비법제에 대하여 어떻게든 저항하려 하고 처지의 상승을 꾀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판결문은 사회의 갈등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당시의 법제 운영뿐 아니라 사회의 열개도 살필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때문에 아직도 검토가 깊이 되지 않은 결송입안들이 다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접근이 어려움도 있지만, 탈초가 되어 있는 자료도 많이 있고, 지속적인 정서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지도 · 다물사리 소송의 판결문도 정서본에 24줄이나 누락이 있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탈초본의 존재가 없었다면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자료를 판독하면서 이전보다 진진된 정서본을 만들 수 있었는데,⁴⁰⁾ 이를 뒤에 붙임으로써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0) 판독의 진진에는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택에서 문서를 컬러로 찍어 온 덕택을 크게 보았다. 촬영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김시인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봉 종가의 여러 어른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학교奎章閣, 1997(영인).
- 『各司受教·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학교奎章閣, 1997(영인).
- 『古文書集成』 제6권(義城金氏川上各派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영인).
- 『稗林』, 탐구당, 1969(영인).
- 이수건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 김경숙, 「16세기 請願書의 처리절차와 議送의 의미」, 『고문서연구』 제24집, 한국고문서학회, 2004. 8.
- 이성무, 「조선초기 노비의 종모법과 종부법」, 『역사학보』 제115집, 역사학회, 1987.
- 이종일, 「朝鮮前期의 戶口·家族 財産相續制 研究」, 『국사관논총』, 국사편찬위원회, 1990.
- 이홍두, 「조선전기 노비종부법과 천인의 신분상승」, 『실학사상연구』 제12집, 무악실학회, 1999.
- 임상혁,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允元·林慶秀 소송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21집, 한국고문서학회, 2002.12.
- _____, 「朝鮮前期의 民事訴訟과 訴訟理論의 展開」,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조우영,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지승중, 「朝鮮前期의 投托과 壓良爲賤」, 『사회와역사』 제8권, 한국사회사학회, 1987.12.

〈붙임〉 이지도 · 다물사리 소송문서 정서본

일러두기	() : 추정하여 넣은 부분 < > : 결락된 글자수를 알 수 없는 부분 □ □ : 결락된 글자수를 알 수 있는 부분
------	--

1. 送亦靈岩郡<>
2. 縣監回答牒呈內南平<>
3. 戶婢多勿沙里仇之等乙所居靈岩郡<>
4. 將及縣都□□□乙用良出其不意掩捕<>
5. 矣仇之段豫知<>婢多勿沙里券<>
6. 爲臥乎等用良委來□□及縣吏准換爲先相考<>
7. 爲去乎□現身日時移文爲乎矣同郡上前推□□
8. 段壬午前叛主不冬文券亦官家良中相考<>
9. 據叛主後文書段何如處置爲有如乎喻<>
10. 爲在果爲先取來亦留鄉所公兄色吏等<>
11. 爲有如乎在亦荷□□不得公兄等告目<>
12. 初七日<>
13. 多勿沙里俵音及壬午<>
14. 婢字是乎等用良同文<>
15. 乎所不喻村□成均館有學習人以每年<>
16. 京館人同力<>捧上爲臥乎例<>
17. 仍于同書員等乙各其□□面以推捉爲乎族<>
18. 徒主人次知捉囚督現爲臥乎味文狀是<>
19. 同婢多勿沙里等叛主爲如乎推案等乙取來有<>
20. 輸送爲乎事是昆并以相考施行向事
21. 呈是乎等用良推閱次丙戌三月十三日南平
22. 接李惟謙妻徐氏代子(李止道)<>(靈岩)

23. 接婢多勿沙里八十二白等矣徒等亦良ㄟㄟ
24. 良能當 〃 爲始 〃 訟爲白在果元隻中無故不就
25. 訟滿二十一日爲白去等依法決折教味白齊同日李
26. 正道更推白等□□多勿沙里果良賤相訟元情ㄟㄟ
27. 矣父惟謙亦養父邊傳來奴主山一所生奴允必
28. 亦本是羅州胎生人以州居日章李順矣女子多勿
29. 沙里乙交嫁婢仁伊乙產長靈岩郡居私奴仇之ㄟㄟ
30. 亦中許嫁爲遺允 〃 女亦他婢嫁妾後本妻ㄟㄟ
31. 于同多勿沙里段其女婚仇之家數十年ㄟㄟ
32. 〃 其女婢仁伊段奴奉世奉先婢奉化仁化奉益奉
33. 伊等產長或收貢或仰役爲如可去甲申年始叱ㄟㄟ
34. 等稍稍逃歸爲去乙矣女亦奴子起送捉來次仇之ㄟㄟ
35. ㄟㄟ類成倘持杖亂打艱難逃避後良中沙謀叛ㄟㄟ
36. (設計)狀乙昭知爲白齊上項仇知亦八十歲妻母多勿沙里
37. 教誘靈岩郡奴婢色吏符同同郡案付他故館婢
38. 吉德矣所生樣以自現後同多勿沙里名以成均館
39. 呈所志復行移到付反以本主乙冒占館婢是如
40. 多般飾詐謀陷大罪爲臥乎所極爲痛憤爲白齊
41. 大槩仇之亦本是強暴人以富饒居生爲旃ㄟㄟ
42. 結官吏所欲必成縱恣無忌乙仍于仇之段置忠清
43. 道沃川居人奴子以成均館投託背其本主ㄟㄟ
44. 成習恣行兇臆爲白如可節段矣父亦退計數十
45. 年前無妄之事以被禍奔竄爲旃矣身段置
46. 年少儒生以全不更事爲白遣矣母置迷劣婦(女)
47. 是去向入多勿沙里仇之等亦乘此機會其矣□
48. 女有所又爲背主投託謀陷設計加于痛憤爲
49. 白齊同多勿沙里亦實爲館婢是喻良置ㄟㄟ

50. 年後現身爲在如中眞僞推卞爲乎事是去乙況
51. 旆故館婢所生是如稱云爲臥乎所初當身現□
52. 收實不得事是沙余良本是羅州胎生人以ㄷ
53. 共知爲去乙靈岩郡所生樣以巧飾假託加于ㄷ
54. 白置州上帳籍內其夫允必矣內外四祖ㄷ
55. 李順矣內外四祖并以退伊相考施行爲白良ㄷ
56. 招爲白去乎相考依法決辦教味白齊同日隻
57. 靈岩接婢多勿沙里更推白等元告李止道
58. 矣議送侂音內乙用良根脚并以現告亦推考ㄷ
59. 是臥乎在亦根脚段父從山婢矣身迷劣時ㄷ
60. 沒名不知母段成均館婢吉德母矣母段夫伊ㄷ
61. 矣年少五歲時身故祖及外祖父母段置竝ㄷ(名)
62. 不知故婢矣身年少十三歲時州居允必乙作夫居
63. 生爲如乎夫身死年月日段記憶不得爲白在果ㄷ
64. 依居生利爲難靈岩地女婚仇之家隨屬ㄷ
65. 置去甲申年分本郡亦婢矣身乙成均館婢是
66. 如賤案成籍孫子奴奉先奴奉益婢奉(化婢仁化)
67. 奴奉伊等乙甲申年爲始身貢出定捧上爲白ㄷ
68. 故夫允必亦李惟謙奴子以婢矣身乙良女是如ㄷ
69. 多產子息爲有臥乎矣使喚計料同子孫等乙背主
70. 是如爲良置母吉德亦成均館婢子是白去ㄷ
71. 眞僞乙良同郡移文賤案退伊相考教是在如ㄷ
72. 良賤分明現發爲白齊故夫允必乙其上典亦良ㄷ
73. 女交嫁不冬是如多般侵勞乙仍于同允必亦婢矣ㄷ
74. 身乙良女以帳籍現付爲白有齊婢矣段百姓不喻成
75. 均館婢子是何的實爲白去乎右良眞僞乙良ㄷ
76. 相考分揀決折教味白齊丙戌三月十四日戶籍(相考)ㄷ

77. 件記內去壬午年六十五年帳內州北莊里日守(李順)ㄟㄟ
78. 年六十一壬午本晉州父達五未祖石只會祖成ㄟㄟ
79. 分今外祖陳貴生妻鄭召史年四十六丁酉本(羅州)
80. 父戶長鄭良祖戶長士從曾祖江伊母羅召史外祖
81. 李三中并產一女多勿沙里年十六丁卯二甥雇工年
82. 七丙子去庚子帳四十七年住南化里戶私奴允必年
83. 四十四丁巳父同奴主山母良女寶背妻良女李召
84. 史年三十四丁卯父學生李順年五十二乙酉父戶長鄭
85. 良祖戶長士從曾祖戶長江母羅召史外祖學(生李)
86. 三中并產一女多勿沙里年十丁卯去丁酉帳五十ㄟㄟ
87. 住南化里戶私奴允必年四十一丁巳父同戶奴ㄟㄟ
88. 良女寶孟妻良女李召史年卅一丁卯父學生順ㄟㄟ
89. 母良女從代等各 現付爲有齊丙戌三月十五日
90. 隻多勿沙里更推白等帳籍相考件記內去
91. 壬午六十五年帳內住北莊里同守李順年
92. 六十一壬午本晉州父達吾乙未祖石只會祖成母分今
93. 外祖陳貴生妻鄭召史年四十六丁酉本羅州
94. 父戶長鄭良祖戶長士從曾祖江伊母羅召史
95. 外祖李三中并產一女多勿沙里年十六丁卯
96. 二甥雇工年七丙子去庚子帳內四十七年住南
97. 化里戶私奴允必年四十四丁巳父同奴主山母良女
98. 寶背妻良女李召史年卅一丁卯父學生順母良女
99. 從代各現付爲有置有等以相考施行教味白齊
100. 丙戌三月二十二日南化里老除儒生曹崇陳年
101. 七十七白等南平接李止道使議送以靈岩接
102. 婢多勿沙里果良賤推閱教是在果矣身段
103. 李止道故戶奴允必後妻女婚以一家之人□□

104. 置良賤與否所不詳知事是昆隱諱除
105. 良從實現告亦推考教是臥乎在亦矣身
106. 亦年老人以本妻身故爲去乙獨居不得去
107. 辛丑年分李惟謙戶奴允必後妻是在
108. 品官崔有源戶婢女子乙作妾居生爲白□□
109. 同允必女子作妾其時所聞爲白乎矣妾父允必
110. 亦多勿沙里乙良女是如交嫁家內率居爲如
111. 可女子仁伊產長同仁伊乙靈岩居寺奴仇之
112. 稱名人乙許嫁後同多勿沙里乙情意不合□□
113. 置不顧爲去乙其女子仁伊家歸在是如爲旅
114. 同仁伊亦女息等多產同子枝等亦同惟謙□
115. 仰役是如爲去乙所聞岔是遣同多勿沙里段
116. 矣身亦一不相見爲白有如乎節李止道果良
117. 賤推閱時良中沙矣家接主人乙仍于相知
118. 爲白有置良賤眞僞乙良妻父允必各年帳
119. 籍相考教是在如中分明現著事是白齊
120. 多勿沙里等亦館婢投托情由段知不得爲
121. 白去乎相考施行教味白齊丙戌三月二十二日
122. 南平接李止道使議送內乙用良郡接婢多
123. 勿沙里果良賤推閱爲在果上項婢多勿沙
124. 里段某年爲始館婢以懸錄爲有臥乎喻元
125. 隻一時備細相考監封火迫輸送亦移文爲有
126. 如乎靈岩兼任康津縣監牒呈內前矣
127. 到付收問內節該南平接忠義衛李惟謙
128. 妻徐氏所志連次使議送內奴主同訟事良中
129. 奴婢所居官以聽訟似爲未便爲乎等用良
130. 羅州以移認爲去乎前推作文取來明正決折

131. 向事議送是齊所志內節該戶婢多勿沙里
132. 等亦子息多數產長或收貢或仰役爲如可
133. 節沙叛主館奴婢稱云是如所志及議送是
134. 乎等用良上項各人等乙前年段置捉送亦四五
135. 度至移文爲良置逃亡稱云捉送不冬推
136. 決不得爲有如乎同多勿沙里乙逃躲不得爲只爲
137. 不意捕捉今去李止道一時使竝定捉送爲乎矣
138. 前招作文并以監封輸送向事間是乎等用良s
139. 相考爲乎矣多勿沙里段此關字到付節時捉
140. 送爲於李仇之段出歸是如靈岩郡貢兄等進
141. 告內仇之段預知逃躲乙仍于執捉不得隨後
142. 執捉起送亦爲有臥乎等用良同人乙良更加
143. 捕捉亦本郡以嚴加行下爲於當初多勿沙里
144. 等叛主設計爲如乎推案等乙收良中輸送次
145. 以同郡斯速搜覓上官亦論行下爲有如乎節
146. 成均館奴婢次知爲臥乎色吏書員崔萬守進
147. 告內婢多勿沙里等亦館婢投托他餘文券段
148. 本無乙仍于輸送不得爲置當初自現所志侑音
149. 粘付一度癸未甲申等年收貢案冊內各人等如
150. 干名付處庫無爲良置相考施行次以輸送
151. 爲臥乎味進告是乎等用良同所志侑音粘
152. 付一張及癸未甲申等兩年收貢案冊乙相考
153. 次以監封輸送爲去乎相考後還爲監封輸送
154. 向事牒呈是齊一時到付靈岩郡兼任康
155. 津縣監牒呈內節到付州關內南平接幼學李
156. 止道使議送內乙用良郡接婢多勿沙里果良賤
157. 推閱爲在果上項婢多勿沙里亦祖母及母等始叱

158. 館婢是乎所納招爲有臥乎等用良其矣祖母
159. 等名付賤案流音良中四祖是沙餘良多勿沙
160. 里段某年爲始館婢以懸錄爲有臥乎喻元
161. 隻一時備細相考監封火迫輸送向事關是
162. 置有亦相考次以賤案流音等乙取來亦同郡
163. 色吏處關字枚舉行下爲有如乎節色吏氷萬
164. 丁亦戊午年正案流音現納爲有乎矣隻人
165. 無所縣以相考不得同正案流音冊乙監封
166. 同郡色吏氷萬丁准換輸送爲臥乎味牒呈
167. 是齊丙戌四月初二日婢多勿沙里更推白等靈
168. 岩郡賤案內婢吉德年四十八正案付丙午
169. 至七十是如爲有乎矣其以下段磨破相考無據
170. 父李田龍是如爲有沙餘良婢矣身亦矣甲申
171. 年七月二十五日館婢吉德所志以自現從母沒
172. 現付爲良結同郡良中侑音爲有乎矣元狀所
173. 志內儀母吉德是如爲有沙餘良某條以甲
174. 申年及癸未等年賤案內名字不付爲有旆
175. 故夫允必後妻女婚曹崇陳招內良中置
176. 婢矣身乙允必亦良妻以交嫁家內率居女子
177. 仁伊亦子息等多產同惟謙家仰役爲如可
178. 館婢投托情由段知不得是如分明納段爲有置
179. 飾辭餘良從實現告亦更良推考教是臥
180. 乎在亦婢矣父祖母始叱館奴婢以使內如可
181. 婢矣身連少時并只身故爲去乙所無依賴州地
182. 入來奴允必乙交嫁後婢矣身乙百姓是如爲白遣
183. 帳籍現付爲乎事是遣婢矣身段館婢的實
184. 爲白去乎相考施行教味侑音良中拒逆不着

185. 爲有齊丙戌四月初三日李止道呈所志內多勿沙
186. 里亦良賤分揀前後招辭及帳籍奴婢案等
187. 內違端此等如現著爲有在而亦大槩其矣
188. 背叛根因段多勿沙里矣女婢仁伊亦祖父母生
189. 時始叱仰役厭憚多般謀避乙仍于在家收貢
190. 爲白遣節段其女婢仁花奉伊等乙母亦家內
191. 喚爲去乙其矣父母亦并只仰役拒逆設計
192. 或家中之物種種偷竊爲跡或更出入教誘
193. 逃避爲去乙母亦不勝其苦時時捉來論罰
194. 爲乎亦中奴夫仇之亦本是強猾人以富饒居
195. 生爲跡矣一家自爲故爲凌辱多發不順之言
196. 使之聞知爲乎矣父段四十年始叱被禍奔竄
197. 失所爲跡母段婦女以懲治無計常憶痛憤
198. 次去甲申年分多物沙里亦其女婚仇之教
199. 誘導良本是羅州日守李順矣女子以靈岩
200. 郡案付館婢所生樣以現告乘時背叛情蹟
201. 是白在果其矣招內假飾辭緣乙備細條陳
202. 爲白齊多物沙里亦其矣初內年五歲其母
203. 身死是如爲良置奴婢案內吉德亦丙申
204. 閏正月初五日是如爲有去等多物沙里亦八十
205. 歲人以丙申年良中其年三十歲是去乙
206. 吉德身死時良中年五歲之理萬無爲白齊
207. 多物沙里亦甲申年自現俸音內其年七十八是
208. 如爲有去等李順帳籍內年歲果相准爲去乙
209. 節招內時年八十二以納段爲有去乎前後各
210. 異爲白齊多勿沙里亦自現俸音內其父乙
211. 營奴從山是如納招爲白遣節招內父從山沒名

212. 不知是如爲去等前後各異爲旡從山段
213. 吉德矣父是白遣吉德夫段百姓李田龍是白
214. 去乙多勿沙里亦實爲吉德所生是在如中
215. 祖名從山乙父名以納招爲有去等飾辭情狀
216. 現著爲白齊多勿沙里亦招內父矣父不知是如
217. 爲有去等必于迷劣常人是喻良置祖父名
218. 諱乙不知爲乎所萬無爲白齊多勿沙里亦
219. 甲申年告狀時其矣郡以自現所志及侑音
220. 分明爲去乙節招內本郡亦成均館婢子是
221. 如續案成籍子枝等身沒侑音捧上是如
222. 爲有去等本郡以續案內成籍爲乎所理無
223. 爲白去乎前後各異是如追呈所志是齊
224. 丙戌四月十七日婢多勿沙里更推白等母吉德
225. 同生族類有無辭緣推考教是臥乎在亦婢
226. 矣身迷劣時父母俱沒乙仍于父母矣同生及族類
227. 有居處聞奇不得叱分不喻當時無白去乎後
228. 次相考施行教味白齊丙戌四月十九日婢多勿沙里
229. 更推白等元告李止道現納全羅道南平接
230. 忠義衛李惟謙妻徐氏所志連次成均館
231. 卽退立案內狀辭是在如中奴而叛主托付他人
232. 其罪不小是去乙更生奸計良中投屬旡不
233. 喻其間奸僞果爲痛憤爲旡吉德戊寅
234. 年貢案現付爲有乎矣子枝等段專不載錄
235. 爲有置推閱分揀事呈始訟官是如施行
236. 立旨是齊所志內家翁養父邊久遠傳來
237. 故奴允必妻多勿沙里亦羅州日守李順矣
238. 女以婢仁伊乙產長靈岩郡私奴仇之交嫁後

239. 奴奉世奉玄奉化仁化奉益奉伊等產長
240. 或收貢或仰役爲如可節亥婢矣仇之亦
241. 極爲富饒奸猾縱恣行乙仍于其矣妻子女仰
242. 役厭憚甲申年分其矣妻母八十將近老女
243. 多勿沙里乙教誘郡色吏符同同郡案
244. 付館婢吉德矣所生樣以現告後館首
245. 奴良中贈賂諱辭誣呈更行移到付脅
246. 制本主爲白去等各年帳籍昭然載錄
247. 爲有去乙仇之亦愚妾妻母教誘背叛投他
248. 侵害百般爲臥乎所極爲痛憤爲乎矣
249. 遠方貧殘之人孤單勢弱乙仍于下決
250. 徵治以乎新發文官亦恟於成均館承
251. 門不下決淹延歲月決訟無期芬
252. 不喻女矣家翁亦甲年被禍流離
253. 失所乙仍于有口無言是去向入叛奴等亦
254. 乘此機會恣赫無窮多般侵害
255. 加于痛憤爲白齊上項婢夫仇之田土數十
256. 結至耕食爲遣交結官吏恣行無忌所
257. 欲如成乙仍于其矣身段清忠道沃川
258. 居人奴子以靈岩郡居金逸俊稱名
259. 人亦買得爲有去乙仇之亦立隻相訟爲
260. 如可自知理屈投入學宮爲乎後甘心其
261. 欲其矣妻子女至亦又爲教誘謀叛爲臥
262. 乎所極爲痛憤爲白齊大概成均館亦本
263. 是首善之地是白在如中元惡大慙
264. 不得枝跡是白去乙叛奴等亦欺胃入屬謀
265. 欲容身爲臥乎所加于痛憤爲白齊其矣投

266. 托情狀果虛僞奸術乙一一後錄爲白去乎
267. 館上貢案相考教是跡其矣侑音果女矣
268. 帳籍并以憑考教是後多勿沙里亦眞徵
269. 矣子息是乎喻明辨播發本道良中備細移文
270. 以解冤悶爲只爲行下所志後甲申七月廿五日
271. 靈岩北一道婢多勿沙里白等婢矣段館婢
272. 吉德所生樣以自現從母投現付爲良置發狀
273. 根因是沙餘良婢矣內又根脚及所生某某產
274. 長與否并以推考教是臥乎在亦根脚段父營奴
275. 從山故父矣父不知故母郡案符成均館婢
276. 吉德故母矣母館婢夫伊故同父母鄉郡內北
277. 一道胎生隨父母長養後乞糧橫行爲如可夫
278. 私奴允必稱名人交嫁一所生奉化二所在婢奉
279. 世三所生婢奉先四所生婢仁化五所生婢奉益
280. 六所生婢奉伊爲等如產長後逐本役爲白良置
281. 自現爲白去乎從母及錄案施行教事其矣
282. 違端多勿沙里亦吉德乙其母是如假稱孫?
283. 爲白良置吉德矣四祖內良中置父從山是如
284. 是如懸錄爲白有遣多勿沙里侑音內良中置
285. 父從山是如爲有去等多勿沙里亦實爲吉德
286. 所生是在如中吉德矣父乙其矣父是如稱云爲
287. 乎所不喻是白去乙多勿沙里吉德一父是白去乎
288. 其矣奸術分明爲白齊其矣侑音內父矣父乙
289. 不知是如納?爲白在果必于無識賤人是
290. 置其矣祖父名號乙知不得是白乎所萬萬
291. 無理爲白去乎加于判然是如立旨及所志是置
292. 有等以相考施行教味爲等如白侑音是臥乎在亦

293. 向前多勿沙里亦李止道婢子不喻館婢的實
294. 是如爲良置節元隻一時州上帳籍及靈岩官
295. 賤案并以相考爲乎矣州帳段己夫丙子年爲始
296. 父日守李順母良女鄭召史是如各年帳籍
297. 昭然載錄爲有旆李止道奴子允必帳籍段
298. 去丁酉年爲始南北里戶奴允必年四十一丁巳妻良
299. 女李召史年卅一丁卯父學生李順母良女從代是如
300. 爲白置靈岩郡賤案段同多勿沙里母是如
301. 稱名爲在吉德叱分載錄多勿沙里前後名
302. 號吉德女子與否取實無據叱分不喻其矣
303. 自現所志內矣母吉德是如爲有去等矣母子息
304. 以萬無爲關婢之理爲旆甲申年自現後
305. 段置賤案不爲載錄爲旆有李止道現納
306. 成均館立案內奴而叛主投付他人其罪不
307. 小是去乙更生奸計館良中投屬笏不喻
308. 其間奸爲果痛憤爲旆吉德段戊寅年
309. 貢案現付爲有乎矣子枝等段全不載錄是
310. 如爲有去等加于館婢以論斷無據其叛主
311. 投托爲良置七十餘歲老病之女子侍其年
312. 老侏音良中拒逆不着各項違錯辭
313. 緣詰問時段置閉口不爲萬答其子息等段專
314. 數逃躲不現推閱決折無期爲置同訟事乙
315. 何如爲良喻唯托書目內多勿沙里亦吉德所生
316. 是如爲良置靈岩郡初亦自現時矣母吉
317. 德是如爲有在如中吉德所生分明叱分不喻
318. 其矣招內其母乙年五歲時身故是如爲乎矣
319. 吉德段丙申年物故爲有在如中其矣招辭

320. 大相抵語爲拈李順帳籍良中置良人
321. 分明爲拈允必帳籍良中置良人以分明入籍
322. 爲有去等其矣口說叱分以吉德所生指論無
323. 據不得已刑推歸一事是乎矣多勿沙里亦
324. 年過七十爲有去等窮詰不得事是昆
325. 先可從帳籍李惟謙妻徐氏亦中決給
326. 爲遣成均館粘移次以辭緣枚舉兩
327. 件唯報向事回送是齊靈岩接婢多勿沙里亦
328. 南平接李止道婢子不喻館婢是乎所相訟良賤推
329. 閱牒報書日內多勿沙里亦吉德所生是如爲良置
330. 靈岩郡初亦自現時儀母吉德是在爲有如亦中非吉德
331. 所生分明叱分不喻其矣招內其母乙年五歲時身
332. 故是如爲乎矣吉德段丙申年物故爲有在如中其矣
333. 招辭大相抵語爲拈李順帳籍良中置良人分明爲
334. 拈允必帳籍良中置良人以分明入籍爲有去等其
335. 矣口說叱分以吉德所生指論無據不得已刑推歸一事
336. 是乎矣多勿沙里亦年過七十爲有去等窮詰不得事
337. 是昆先可從帳籍李惟謙妻徐氏亦中決給爲遣
338. 成均館粘移次以辭緣枚舉兩件□報向事回送是乎
339. 等用良粘移次以兩件成貼上決尾□□粘移到付
340. 教回送是乎等用良上項所訟奴婢等乙良依回送導
341. 良元告李止道亦中決給花名後錄爲遣合
342. 行立案者
343. 牧使 (押)
344. 昌律生柳吐春[手決]
345. 准金禹悅[手決]
346. 後 奴允必良妻多勿沙里并産

347. 一所生婢仁伊年四十九戊戌
348. 同婢一所生婢奉化年卅丁巳
349. 二所生奴奉世年廿八己未
350. 三所生婢仁花年廿六辛巳
351. 四所生奴奉先年廿三甲子
352. 五所生婢奉益年廿一丙寅
353. 六所生婢奉伊年十六辛未

An Analysis of the Case, Ih Jido vs. Damulsari in 1586

Ihm, Sahng-Hyeog*

The case of Ih Jido and Damulsari, one of the judgement which Kim Seong Il sentenced when he held office in Naju as a local governor, serves good as a example of the slavery(called nobi[奴婢] in Korean history) and its implementation in 16th centuries. In ordinary nobi case, one party claim as a yang'in([良人]a freeman who is higher than nobi in Joseon's caste system), while the other claims the person as his or her nobi. In this case, however, the defendant, Damulsari claimed oneself as a nobi not yang'in, which was one irony that Joseon's nobi system produced.

In Joseon's nobi system, when one of the parents was nobi, he or she became a nobi. And when the both parents were nobis, the master of the mother claimed the ownership of the children. Nobi was divided into two groups, sanobi(private nobi), and gongnobi(public nobi), and the latter was considered less hardworking. That's why Damulsari claimed himself as a gongnobi belonging to Seongeoynguan(the supreme academy in Joseon), while Ih Jido insisted that Damulsari was a yang'in who got married to his nobi Yunpil, therefore claiming the ownership of Damulsari's grandchildren.

This case shows the various social aspects of 16C Joseon Dynasty, one party making efforts to liberate from the bondage, the other party endeavoring to enlarging the numbers of his nobis, such as secretively registering a innocent yang'in as one's nobi(called yamrok). This research contains the analysis of this case and the reading of the illegible judgement document of it for another researcher's further examination.

* Assistant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Key Words] the slave case, Nobu, Ih Jido, Damulsari, Kim Seong'il, Amrok(secretively registering), Tutak(human trust), the judgement document